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창간호 _ 2011년 3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다, 장애인만 빼고!

2005년 7월 어느 날, 대구DPI 서준호 국장은 대구지하철공사 1층 화장실에 갔다가 난감한 경험을 했습니다.
화장실 문이 유리로 되어 있어 내부가 훤히 보였던 거죠. "장애인이 화장실에서 사고가 날 경우 재빨리 조치하려고" 그랬답니다. 도둑 잡는다면서 여탕에 카메라 설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장애인은 예외인가 봅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장애인을 보면 동등한 권리의 주체라는 생각보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생각부터 떠올리나 봅니다.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창간호 _ 2011년 3월

CONTENTS

02 **장애와 이미지**

04 **편집자 편지** 〈모니터링 리포트〉를 발간하며

06 **센터는 지금…** 2011년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중점 사업

2011년 모니터링 단원 교육 열려

15 **포커스 I**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 참여

20 **포커스 II** 광역자치단체의 장애 관련 조례 현황

27 **포커스 III**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장애인 정책·예산 비교

35 **서평** 동정은 싫다

38 **Cinema** 레인맨

40 **장애 이슈**

발행인 이범재 / 편집인 윤삼호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3동 355-294 신일빌딩 2층
Tel 02-833-3097 / Fax 02-833-3096 / 홈페이지 http://www.ableforum.co.kr
이메일 ableforum@hanmail.net

〈모니터링 리포트〉를 발간하며

안녕하세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윤삼호입니다.

3월도 중순인데 꽃샘추위가 매섭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았는데, 자연이나 인간이나 시샘하는 건 매한가지인가 봅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지진으로 숱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고 하니 몸과 마음이 더 스산한 계절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모니터링 리포트〉가 조금이나마 희망적으로 읽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센터가 창립한 지 벌써 5년째인데, 이제서야 소식지를 내자니 겸연쩍기도 합니다. 바쁜 실무를 핑계로 우리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데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장애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좋은 정책을 개발하려는 지방 공무원과 의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되면 정책 생산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늦게나마 〈모니터링 리포트〉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올해는 우선 40~48쪽 분량의 격월간으로 모두 다섯 차례 발간합니다. 호당 발행부수는 2,000부 정도지만, 우리 센터로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월간으로 전환시키고 발행부수도 더 늘릴까 합니다만, 인력과 예산이 그만큼 될 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소식지의 주요 독자층은 아마 장애인 활동가와 지방의원 및 공무원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구독을 신청하면 책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리포트〉에 실린 글은 주로 우리 센터가 모니터링한 자료들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장애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함께 실었습니다.

'센터는 지금...'은 우리 센터의 활동이나 행사 등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이번호에는 우리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을 요약하여 실었습니다. 올해 사업 가운데 지방의회모니터링, 지방예산모니터링, 조례모니터링은 다년 사업이고, 모범음식점모니터링과 '장애인' 화장실모니터링은 단년 사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포커스'는 우리 센터의 각 사업부문별로 수집한 자료들을 독자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재가공하여 싣는 꼭지입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의회 방문추 의원의 의정활동 사례('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 참여'),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조례 현황 분석, 고양시-일산시-수원시 장애인 관련 예산 비교 분석 자료를 실었습니다. 아마도 이 꼭지가 우리 소식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Book & Disability'와 'Cinema & Disability'는 장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적과 영화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이번호에는 '동정'이라는 키워드로 미국장애운동을 정리한 〈동정은 싫다〉와 자폐인 소재 영화 〈레인맨〉을 소개합니다.

'장애 이슈' 꼭지에는 장애인 공동체의 최근 소식과 쟁점이 될 만한 장애 정책들을 짧게 요약하여 실었습니다.

지면이 제한된 탓에 꼭지가 많지 않고 구성도 다소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독자님들의 마음에 쏙 들지는 않더라도 펼쳐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잡지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점은 하나씩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님들의 사랑과 비판을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럼, 다음 호에서 뵙겠습니다.

2011년 3월 17일 윤 삼 호

2011년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중점 사업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당사자의 관점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장애 관련 정책, 제도, 법률 따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① 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장애인 사회의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② 장애인에 의한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③ 장애 관련 정책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며
④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 그리고 인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구이다.

■ 2011년 주요 사업은?

1. 예산 · 정책모니터링

① **대 상** : 중앙 정부와 244개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예산서 전수조사
② **목 적**
-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예산 감시와 정책 평가를 통해 장애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
- 장애 관련 예산의 범주화를 통해 '장애인지적' 예산 개념의 도입 가능성을 모색함.
- 지자체 간 예산 비교를 통해 좋은 장애 예산 편성을 확산하고자 함.

③ **방 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1년 전체 예산서에 접속
- 이 가운데 장애 관련 예산을 추출하여 별도의 양식에 기입
- 장애 예산을 지역별, 유형별, 연도별 분류하고 특이성 분석

④ **주요 결과물** : 예산백서, 예산토론회
⑤ **사업비** : 3,400만원(보건복지부 지원)

2. 지방의회모니터링

① **대 상** : 광역자치단체(16개)와 기초자치단체(228개) 의회 회의록과 조례 전수조사
② **목 적**
- 지방의회의 장애 관련 발언과 조례, 그리고 장애 관련 공약 달성 정도를 의회별, 의원별로 평가하고자 함.
- 의정 활동 모범사례들을 개발하고 이를 사례집과 정책 제안서로 만들어 모든 지방의원들에게 배포하고자 함.

③ **방 법**
-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체 회의록 검색
- 이 가운데 장애 관련 발언을 추출하여 의회별, 발언성격별, 의원별로 분류
- 전문가들이 발언 1건 당 0~3점 척도로 평가(평가위원 5명)

④ **주요 결과물** : 의정백서, 의정활동평가 토론회, 우수의원 시상, 의정 활동 모범사례집
⑤ **사업비** : 3,200만원(보건복지부 지원)

3. 모범음식점모니터링

① **대 상** :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자치구의 '모범음식점' 약2,800개소

② **목 적**

- 모범음식점 접근성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중증 장애인의 '최소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에 장애인 접근성 조항이 포함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을 변경을 제안하고자 함.

③ **방 법**

- 모니터요원이 사전에 표집된 모범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체크리스트에 장애인 접근성 여부 기입함.
- 주출입구 접근가능성, 입석 테이블 설치 여부, 화장실 접근가능성 등 3가지 항목('최소접근성 항목')을 모니터링함.

④ **주요 결과물** : 조사보고서, 토론회, 정책건의서

⑤ **사업비** : 3,320만원(보건복지부 지원)

4. 공공화장실모니터링

① **대 상** : 서울시와 6대 광역시 구·군청 화장실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 화장실 전수조사

② **목 적**

- 공중화장실 내에 설치된 접근가능한 화장실(속칭 '장애인 화장실')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장애인 전용시설로 인식되어 '기피시설화'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화장실'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화장실 명칭과 픽토그램을 바꾸는 등 실질적인 공용시설로의 전환을 보건복지부에 정책 건의하고자 함.

③ **방 법**

- 모니터용원이 사전에 표집된 공공화장실을 직접 답사하여 조사함.
- 속칭 '장애인 화장실'의 남·여 구분 여부, 설치 위치(일반 화장실 내부 또는 외부), 픽토그램 등을 모니터링함.

④ **주요 결과물** : 조사보고서, 토론회, 정책건의서

⑤ **사업비** : 1,500만원(보건복지부 지원)

5. 지자체 장애 정책 및 인권 평가지표 개발

① **대 상**

② **목 적**

- 우리 센터가 모니터링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16개 광역시도의 장애인 정책 및 인권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이렇게 개발된 지표를 적용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 및 인권 수준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③ **방 법** :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표를 개발함.

④ **주요 결과물** :

⑤ **사업비** : 960만원(보건복지부 지원)

6.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① **대 상** : 지방의회, 각급 지자체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체 등

② **목 적**

-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우리 센터가 모니터링 한 각종 정보와 원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보 수요자들의 이용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모니터링리포트'를 격월로 발간하여 우리 센터가 생산한 각종 정책 정보를 전국의 지방의원, 일선 공무원,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함.

③ **방 법** : 격월간으로 '모니터링리포트'를 발간함.

④ **주요 결과물** : 모니터링리포트

⑤ **사업비** : 2,100만원(보건복지부 지원)

7. 자치법규모니터링

① **대 상** : 16곳 광역단체와 228곳 기초단체 자치법규 약90,000건

② **목 적**

-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장애차별적 조항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자료를 관계 당국에 제출하여 문제 조항의 개정을

촉구함.

-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기초한 '조례제·개정운동'을 통해 장애친화적 자치법규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

③ **방 법**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에 접속함.
-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의 전체 규모와 장애 관련 조례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차별적 조항들을 모니터링함.

④ **주요 결과물** : 자치법규백서 및 보고서, 토론회, 정책건의서

⑤ **사업비** : 1억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활동가 소개

이 름	직 위	담 당 업 무
윤삼호	소장	업무 총괄
현근식	연구위원	예산·정책모니터링
김의수	연구원	자치법규모니터링
강인영	연구원	의정모니터링
박정연	연구원	모범음식점모니터링, 화장실모니터링
고정희	간사	행정업무

◀ 모니터링센터 활동가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삼호 소장,
김의수 연구원, 박정연 연구원,
강인영 연구원, 현근식 연구위원

2011년 모니터링 단원 교육 열려

– 장애인 당사자 단원 89%, 1박2일 동안 집중 교육

▲ 진지하게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모니터 단원들

우리 센터는 3월10일부터 11일까지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2011년 장애인정책모니터 단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가한 단원은 모두 37명이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33명(89%)이고 비장애인은 4명(11%)이었고, 남자는 24명(65%), 여자는 13명(35%)이었다. 따라서 올해도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모니터링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진 셈이다.

모니터링이 사회를 바꾼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모니터링 분야별로 별도 교육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단원들이 함께 모여 집체 교육을 받았다. 이는 전국의 단원들에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다.

본 교육에 앞서 대강당에서 전체 단원과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범재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우리의 모니터링사업 덕분에 이 사회가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단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각 지자체들이 우리가 모니터링한 자치법규의 문제를 수용하여 장애차별적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이 각 영역별 모니터링 업무 전반을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윤 소장은 "모니터 단원들 대부분이 장애인 당사자인 만큼 자신이 하는 일이 모든 장애인을 위한 일이면서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며,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 모니터링 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저상버스 예산이 장애인 예산인가?

또 특별 강사로 초빙한 국회예산정책처 김대철 박사는 '지방예산과 장애인 예산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김 박사는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자체단체 예산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단원들의 질문이 30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 가운데는 중앙정부가 복지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한 뒤에 오히려 지방정부의 장애인예산 부담이 가중된 것이 아닌가, 지방교부세와 통합재정수지(중앙정부 재정 +지방정부 재정)의 관계는 어떠한가, 저상버스 예산이 일반예산인가 장애인예산인가 등 수준 높은 질문들도 있었다.

▲ 예산모니터링 교육 장면

▲ 접근성모니터링 교육 장면

이어서 지방의회모니터링, 자치법규모니터링, 예산모니터링, 접근성모니터링 등 각 분야별로 집중교육이 진행되었다. 지방의회모니터링 교육(담당: 강인영 연구원)에서는 지방의회 회의록 접근 방법, 장애 관련 발언 검색 방법, 검색한 발언을 엑셀로 정리하여 모니터링센터로 보내는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자치법규모니터링 교육(담당: 김의수 연구원)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접근하는 방법, 장애 관련 자치법규의 범위와 검색 방법, 그리고 장애차별적 조항의 검색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산모니터링(담당: 현근식 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과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이지수 연구원)의 경우는 기초지자체 1곳의 전체 예산서가 500~8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자료의 양이 엄청나고, 그 가운데 장애 관련 예산만 추출해야 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되는 업무여서 특별히 선발된 단원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끝으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접근성모니터링 교육(담당: 박정연 연구원)은 모범음식점모니터링 교육과 '장애인' 화장실모니터링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빠듯한 교육 일정이었음에도 중증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장애인들이 1박2일 동안 한 사람 빠짐없이 진지하게 교육에 참석하였다. 더구나 교류회를 통해 각 지역 장애인 단원들이 모처럼 모여 정보도 교류하고 단원들 간의 유대도 강화하였다.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해야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사장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장애인 편의시설이었다.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공용 화장실이 1층에만 있어 2층에서 교육받던 단원들이 1층까지 내려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게다가 화장실 출입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 그곳이 화장실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또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통로에는 철문이 있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혼자서 문을 열 수가 없었다. 특히, 전체 객실 95실 가운데 장애인이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3실뿐이었다. 이 시설이 3월3일에 개관한 신축 건물이고, 서울시가 직영하는 숙박시설임을 감안하면 더욱 아쉽다.

최근 서울시는 'Design for All(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란 슬로건을 앞세워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하이서울유스호스텔만 놓고 보면 그런 구호가 무색해 보인다.

모니터 단원 파이팅! ▶

2011년 모니터 단원 명단

지역	이 름	성	장애유형	소 속	담당 분야			
					의 정	예 산	조 례	접근성
경기	신지원	여	지체2급	개별	○		○	
	양연희	여	뇌병변2급	개별			○	
	이경원	남	지체1급	중원IL		○	○	
	임현영	여	지체2급	일산IL	○			
	박경서	남	뇌병변1급	일산IL	○	○	○	
경남	남정우	남	지체1급	아자IL			○	
	강정순	여	지체·안면1급	경남포럼	○		○	○
	김종범	남	청각·지체2급	경남포럼	○		○	
	김효수	남	지체·안면1급	경남포럼			○	○
광주	최성배	남	지체1급	광주				○
	강성덕	남	지체1급	열린케어	○		○	
	조영모	남	신장2급	열린케어		○	○	
	이대형	남	지체2급	광주				○
대구	송재동	남	지체2급	맥IL				○
	김재훈	남	지체1급	개별			○	
	채경훈	남	지체1급	맥IL	○			
대전	김동일	남	비장애	보문IL		○		
	이미정	여	뇌병변2급	보문IL				○
	안태홍	남	뇌병변3급	보문IL	○			
	함석배	남	지체1급	보문IL	○			
	송승훈	남	지체1급	보문IL	○			
부산	김민기	여	지체3급	개별	○			○
	전웅길	남	뇌병변5급	금정IL			○	
서울	김종숙	여	지체1급	성북IL				○
	지미희	여	지체3급	길벗IL				○
	신나리	여	뇌병변2급	서울IL			○	
	이지수	여	비장애	일산IL			○	
	주낙운	남	뇌병변1급	노원IL			○	
	안성숙	여	뇌병변1급	길벗IL			○	
	한동국	남	지체3급	길벗IL			○	
	한승철	남	뇌병변1급	개별		○		
	정 웅	남	비장애	구로IL		○		
울산	박미경	여	비장애	울산포럼			○	○
전북	문지현	여	지체1급	전북포럼	○			
	김호복	남	지체3급	전북포럼				○
	성경민	남	지체1급	전북포럼	○			
	권 원	남	지체4급	전북포럼	○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 참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추 의원 사례

글. **강인영** / 센터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추 의원(민주당)은 2006년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장애인 주민 참여가 저조하다며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방 의원은 도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역 여성들의 참여는 어느 정도 활발한데 장애인 주민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 제주도내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35%이다. 여성정책을 입안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본다. 그런데 장애인의 참여는 아주 저조하다.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중 4곳에 장애인 위원이 위촉된 게 전부다. …
>
> 한 번이라도 읍·면·동에 장애인 자치위원 위촉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가? … 2007년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도 읍·면·동에서 한 명씩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2006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2006. 11. 23)〉

이에 대해 양임숙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은 "차후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장애인이 왜 적은가?”

방문추 의원이 언급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민자치기구이다. 행정 전달 기능만 하던 기존의 동사무소 기능을 확장하여 주민 복지와 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지역 주민의 행정 참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 의회에서 도정 질의를 하고 있는 방문추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인 방 의원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이며, 특이하게 비례대표로만 2선 의원이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조례’는 지역개발계획 및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이해 조정, 환경영향평가·주요사업 예산·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 제출, 옴부즈맨 역할 등 11가지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16조)

그리고 위원회는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가진 지역주민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위촉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17조) 여기서 문제는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면서 장애인 등 소수자의 참여를 권장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방문추 의원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한 것이다.

방 의원은 4일 후 같은 회의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다시 이 문제를 질의한다.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 참여 절차와 장애여성의 참여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 주민자치위원가 어떤 절차로 선정하고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주민참여기구인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님이 추천을 할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이 추천을 해야 참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 그리고 여성, 특히 여성장애인의 참여비율이 낮은 것은 관심이 그만큼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위원은 직접 주민이 선출하고, 여성과 장애인은 할당을 하여 당연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2006. 11. 27)〉

그러자 이경숙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의 참여폭을 높여달라는 의견은 많이 들었지만, 아직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 앞으로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방 의원은 그 뒤로도 이 문제를 계속 밀고나가 집행부가 제대로 실천하는지 꼼꼼하게 챙겼다. 가령, 복지안전위원회 236회1차(2007. 2. 6) 회의 때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 모집에서 여성이자 장애인인 거주자가 탈락’ 한 적이 있는데, 그 여성은 ‘전문성이 풍부하고 지역에 2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였다.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 참여 대폭 확대

방문추 의원이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질의를 하자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장애인 주민의 참여를 적극 고려하라는 공문을 산하 모든 시·읍에 보냈다.

제주도청이 2009년 10월30일 우리 센터로 보내 온 공문을 보면, 도내 전체 주민자치위원 1,063명 가운데 장애인은 44명이다.(4.1%) 제주시가 641명 가운데 32명(5.0%), 서귀포시가 422명 가운데 12명(2.8%)이다. 읍면동별로 보면, 전

체 43곳 읍면동 중 28곳에 1명 이상 장애인 자치위원이 있다(참여율 65.1%). 제주시의 경우 26곳 읍면동 중 19곳에 1명 이상 장애인 자치위원이 있고(참여율 73.1%), 서귀포시는 17곳 읍면동 중 9곳에 1명 이상 장애인 자치위원이 있다(참여율 5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①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100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기본조례 제7조②항(도지사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을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 참여의 근거였다.

방문추 의원 사례의 시사점

주민자치위원회의 장애인 주민 참여 문제를 집행부에 따진 지방의원은 (적어도 2010년 6월까지는) 방문추 의원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처럼 방 의원의 문제 제기와 그에 따른 현실의 변화는 지방 의정 활동에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장애인의 지역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방 의원의 문제 제기로 장애인 주민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가 대폭 확대되었지만, 이 때문에 제주도청이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한 적은 없다. 즉,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 정책 제안이어서 그만큼 실현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이 점은 다른 지방의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방 의원은 한 번 질의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4번이나 질의하고 집행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였다. 지방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좋은 지적을 해 놓고서도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끝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때가 많다. 여기에 비하면 방 의원의 끈기와 집중력이 돋보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굳이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장애인 주민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 개정까지 갔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조례'는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17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장애인 등 소수자의 참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방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민자치위원 할당제를 주장했지만, 조례 개정 논의까지 문제를 계속 밀고 나가지는 못했다.

넷째,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시정부와 시의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제주도 담당 공무원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공모도 했음에도 자치위원으로 나서려는 장애인 주민이 없는 지역이 더러 있어서 참여율을 100%까지 끌어 올리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결국,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지역사회의 배려와 당사자들의 관심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한 일인 셈이다.

아무튼 제주도의회 방문추 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 참여 발언은 신선하고 효과적인 주장이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 의정 활동은 예산 확보나 조례 제정처럼 큰 노력을 기울여야 성취되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 방문추 의원처럼 작은 관심에서 출발하지만 그 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한 것도 있다. 어떤 접근법이 더 바람직한가를 떠나, 바라건대 판에 박힌 듯한 의정 활동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활동 사례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장애 관련 조례 현황

글. **편집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09년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장애 관련 조례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첫해에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에 접속하여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조례 규모와 장애 관련 조례 수를 파악하는데 그쳤다. 예산의 제약이 심했던 탓이다.

다행히, 이 사업은 2010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에 선정되어 3년 동안 연간 1억원씩 지원받게 되었다. 이 기금으로 1년차에는 16곳 광역자치단체 조례 약8,700건을 모니터링했고, 2년차인 올해 228곳 기초자치단체 조례 약 82,000건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모니터링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즉 일반 조례에 포함된 장애차별적 조항과 장애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이다. 마지막 3년차에는 장애인단체들과 연대하여 조례제개정운동을 전개하고 할 계획이다.

▲ 서울시청 앞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 글에서는 1년차 사업 결과들 가운데 16개 광역자치단체 장애 관련 조례의 전반적인 현황만 간략하게 서술하겠다.

광주, 경기, 제주 가장 많고 서울은 평균 이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조사한 결과, 장애 관련 조례는 모두 10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평균 6.7건 정도의 장애 관련 조례가 제정된 셈이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광주시, 경기도, 제주도가 10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청남도와 경상남도가 9건, 대구시와 강원도가 8건, 대전시와 전라북도가 7건 순이었다. 반면, 충청북도(2건), 부산시와 울산시(3건), 경상북도(4건). 전라남도(5건), 서울시와 인천시(6건)의 장애 관련 조례수는 전국 평균도 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올해 1월 장애 관련 조례 2건을 제정했음에도 여전히 평균 이하 수준이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자성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장애 관련 조례를 분야별로 비교하면, 복지일반(20건), 이동·편의(19건), 복지시설(18건) 순으로 많다. 하지만 여성·아동(1건), 자립생활(10건), 소득보장(11건), 문화·체육(14건) 등 장애인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의 제정은 저조한 편이다.

자립생활조례, 출산지원금조례, 인권조례 부족

또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3대 조례라고 할 수 있는 '자립생활지원조례', '장애여성출산지원금조례', '장애인인권조례' 제정 현황은 지자체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자립생활지원조례의 경우 2006년 광주시에서 처음 제정된 뒤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10곳 지자체에서 제정되었다. 아직 부족하지만, 이 정도나마 제정된 것은 2000년부터 중증장애인 중심의 자립생활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덕분일 것이다. 하지만 장애여성출

산지원금조례는 2009년 충청남도에서 제정된 것이 유일하고, 장애인인권조례의 경우도 지금까지 전라남도와 서울시에서만 제정되었다.(그나마 서울시 장애인인권조례는 올해 1월13일에 제정되었다.) 조례의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질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자치단체들이 감지하였으면 한다.

광역자치단체 장애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11. 2. 현재)

시도	계	이동 · 편의	소득 보장	여성 · 아동	복지 시설	복지 일반	문화 체육	자립 생활	기타
서 울	6	1	1			1		1	2
부 산	3	1				1		1	
대 구	8	2	1		1	1	1		2
인 천	6	1			1	1	1	1	1
광 주	10	3	1		1	1	2	1	1
대 전	7	2	1		2	1		1	
울 산	3	1			1	1			
경 기	10	2	2		1	2	1	1	1
강 원	8		2		1	2	1	1	1
충 남	9	1		1	2	1	2	1	1
충 북	2				1	1			
전 남	5				1	1	1		2
전 북	7	2	1		1	1	1		1
경 남	9		2		3	1	1		2
경 북	4				1	1	1	1	
제 주	10	2			1	3	2	1	1
	107	18	11	1	18	20	14	10	15

한편, 전국 최초의 장애 관련 조례는 대구시에서 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시는 1983년에 '대구정신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이어 1984년에는 '대구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

연도별 장애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1983년부터 2003년까지 제정된 조례들은 복지관 또는 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2004년부터는 편의시설, 교통 및 이동, 자립생활, 소득보장 등 장애 관련 조례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또 2003년 이전까지 20년 동안 제정된 장애 관련 조례가 통틀어 21건에 불과한 반면, 2004년부터 7년 동안 제정된 조례는 이 보다 4배나 많은 86건이었다. 이는 2000년 이후 본격화된 중증장애인 중심의 장애운동과 이에 따른 정부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조례 제정과 정책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조례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관련 정책과 시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의 경우 올해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자립생활지원 시책은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앞서 있었다. 반대로 충청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장애여성출산지원금조례를 2009년에 제정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는 조례와 정책이 상호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 장애 관련 조례 목록

(2011. 2. 현재)

시·도(건)	조 례 명	제정연도
서 울 (6)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07.05.29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05.07.21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을위한조례	09.07.30
	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	95.03.20
	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	11.01.1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11.01.13
부 산 (3)	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에관한조례	06.05.10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05.05.0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09.02.04
대 구 (8)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07.10.30
	대구정신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83.02.01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	08.09.10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84.07.01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05.08.10
	장애인체육진흥조례	09.10.12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설치및운영조례	10.04.20
	한센병관리사업위탁시행에관한조례	94.09.30
인 천 (7)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08.06.23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94.01.01
	장애인체육진흥조례	09.11.09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08.08.04
	장애극복상조례	02.03.25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	05.09.26
광 주 (11)	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	04.07.30
	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08.03.28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08.08.01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03.01.01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05.02.18
	장애인체육진흥조례	09.05.15
	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	10.01.1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06.07.15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	09.08.03
	지적·자폐성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	09.07.15
대 전 (7)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08.12.26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00.12.15
	장애인등편의시설사전검사조례	07.08.17
	장애인근로사업장조례	10.01.08
	장애인복지시설조례	09.12.31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05.09.2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09.02.27
울 산 (3)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08.05.08
	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	02.11.15
	장애인복지위원회운영조례	05.10.04
경 기 (10)	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04.07.19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	09.12.16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09.04.21
	장애인등의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	08.01.07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	08.12.3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	10.03.18
	장애극복상조례	01.06.11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08.12.12
	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05.07.2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09.08.13
강 원 (8)	장애인등의최적관람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08.12.29
	장애인가정지원조례	09.10.30
	장애인복지대상조례	00.03.15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05.12.30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	07.12.28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88.09.1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08.05.09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	09.10.30
충 남 (9)	공공시설내장애인관람석설치 · 운영조례	05.10.3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10.02.10
	여성장애인출산및영아양육지원조례	09.04.15
	장애인가족지원조례	09.10.30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07.12.31
	장애인상조례	06.08.21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02.09.23
	장애인체육진흥조례	08.06.1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07.12.31

시·도(건)	조 례 명	제정연도
충 북 (2)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99.07.30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05.08.05
전 남 (5)	공공시설내장애인등의관람석설치·운영조례	08.05.27
	장애극복상조례	08.05.27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증진에관한조례	10.05.13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05.09.29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91.04.04
전 북 (7)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87.08.0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	08.10.31
	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05.12.30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	09.04.24
	장애인체육진흥조례	08.10.31
	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	09.07.31
	한센병관리사업위탁조례	94.10.07
경 남 (9)	도립정신병원및노인전문병원설치조례	92.01.14
	모범장애인상조례	09.08.13
	장애인체육진흥조례	09.10.15
	장애인가족지원조례	10.05.0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조례	10.02.11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06.04.13
	장애인종합복지관관리 · 운영규칙	92.08.19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92.06.2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	09.07.02
경 북 (4)	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 · 운영조례	05.11.17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99.03.18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05.12.29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08.03.31
제 주 (10)	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	08.05.14
	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	09.06.03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07.03.07
	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	06.04.12
	장애인복지기금조례	06.10.18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06.10.18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08.10.08
	장애인체육진흥조례	10.03.24
	장한장애인대상등시상조례	07.03.0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09.06.03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장애인 정책·예산 비교

글. **이지수** /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연구원

프롤로그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상당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지역의 복지는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장, 예산의 효율성 증대, 지역밀착형 복지의 실현, 사회복지 예산증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들은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축소, 지역 간 불평등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하

▲ 고양시청

▲ 수원시청

▲ 성남시청

기 때문에 복지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했다. 또 장기적 계획 없이 복지예산을 집행하여 서비스가 꼭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기보다 '거대한 복지관'을 지어 놓고 생색을 내기도 했다.

1. 지자체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의 필요성

장애인 복지 업무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들은 시정방침에 따라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계획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편성 계획이 반드시 포함된다. 예산을 결정한다는 것은 곧 지방의 정책 또는 사업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커지며, 그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의 토대가 되는 장애 관련 예산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지역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부터 예산이 올바르게 책정, 배분되었는지 모니터링하고, 나아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은 2010년에 경기도 〈지자체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등 지자체 3곳의 장애인 정책·예산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도시를 선택한 까닭은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의 전체 인구 규모(90만~100만)와 장애인 인구수(3만 이상)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2.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장애인 예산 비교

① 장애인 예산비율 비교

모니터링 결과, 〈표1〉에서 보듯이 2010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은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순이고, 장애인 예산은 성남시(40,434,884천원), 고양시(33,315,247천원), 수원시(32,080,342) 순이다. 장애인 예산비율은 고양시 2.7%, 성남시 2.3%, 수원시 2.2% 순으로 많다. 하지만 세 도시 모두 2% 미만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예산 비율이 공식적인 장애인 인구비율(약5%)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1〉 장애인 예산 비교

(단위 : 명/천원/%)

	전체 인구수	전체 예산	장애인 예산	장애인 예산 비율
고양시	938,831	1,224,148,862	33,315,247	2.7
수원시	1,067,425	1,435,629,380	32,080,342	2.2
성남시	942,447	1,757,774,347	40,434,884	2.3

② 1인당 장애인 예산 비교

그리고 〈표2〉에서 보듯이 2010년 장애인 예산 총액은 성남시 약 40,434,884천원, 고양시 약33,315,247천원, 수원시 약32,080,342천원 순이었다. 1인당 장애인 예산 역시 성남시 약1,164,000원, 고양시 약965,000원, 수원시 약842,000원 순이었다. 특히, 성남시는 장애인 인구수가 수원시에 비해 3,400명 정도가 적음에도 예산은 오히려 약84억원이 많았다. 이 때문에 성남시의 1인당 장애인 예산이 다른 도시보다 20~30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1인당 장애인 예산 비교

(단위: 천원/명)

	장애인 예산	장애 인구수	1인당 예산
고양시	33,315,247	34,540	965
수원시	32,080,342	38,120	842
성남시	40,434,884	34,731	1,164

③ 장애인 예산 재원구성 비교

이처럼 성남시의 전체 장애인 예산과 1인당 장애인이 높은 까닭은, 재원구성비에서 다른 2곳 도시 보다 자체예산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3〉에서 보듯이 성남시는 국비와 도비 비율은 가장 낮은 반면 시비(국·도비 매칭펀드 포함)의 규모는 가장 크다. 성남시의 시비 비율 57.8%는 고양시 시비 비율 43.2% 보다는 무려 14.6%나 높다. 이는 성남시가 다른 도시들보다는 장애인 예산 확보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보여준다.

〈표3〉 장애인 예산 재원구성

(단위: 천원/%)

	국비(비율)	도비(비율)	시비(비율)
고양시	10,030,634(30.1)	8,889,568(26.7)	14,395,045(43.2)
수원시	9,051,528(28.2)	5,740,545(17.9)	17,288,269(53.9)
성남시	10,573,275(26.1)	6,454,572(16.0)	23,407,037(57.9)

이처럼 자체예산을 많이 확보한 덕분에 성남시는 다른 도시들보다 장애인 정책을 더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테면, 성남시의 장애정책 사업은 161건으로 고양시 126건, 수원시 100건보다 많다. 특히, 성남시는 국비나 시비와 매칭펀드(matching-fund)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체예산만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건수가 95건인데, 이는 수원시는 48건, 고양시는 44건 보다 무려 2배나 된다. 그 결과, 전체 장애인 예산 가운에 자체사업 예산의 비율이 고양시 17.7%, 수원시 26.1%보다 훨씬 많은 37.2%나 된다.(〈표4〉 참고)

〈표4〉 자체사업 예산 비교

(단위: 천원/%)

	장애인 예산	자체사업 예산	비 율
고양시	33,315,247	5,906,060	17.7
수원시	32,080,342	8,366,043	26.1
성남시	40,434,884	15,067,266	37.2

성남시의 자체사업에는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지원(3,000만원), 장애인취업상담센터지원(6,000만원), 장애인가족서비스활동비지원(4,000만원), 장애인무료치과진료(3,240만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300만원)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예산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역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남시의 자체사업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예산 항목별 비교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장애인 예산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그 비율을 비교하면 〈표5〉와 같다. 이는 지자체별 장애인 예산의 배분 구조를 통해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 도시는 모두 '장애인 시설'(생활시설, 복지관 등)과 '소득보장'(장애수당 등)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지원', '자립생활', '이동편의' 등의 항목에 예산을 많이 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예산 가운데 '장애인 시설' 예산 비율은 고양시 50.2%, 성남시 45.8%, 수원시 32.5%로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심한 편이다. 여기서 고양시와 성남시의 시설 예산이 약50%에 이른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형적인 경직성 예산인 시설 예산이 과다할 경우 정책 다양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향후 예산 압박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더구나 활동보조서비스 등 개인별 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서 시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다는 것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자립생활' 예산의 경우는 성남시가 9.5%로 가장 높고 다른 두 도시 8% 수준이지만, 세 도시 모두 10% 미만이라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예산과 정책이 개인별 서비스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시설 중심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동편의' 예산은 수원시 14.46%, 성남시 7.48%, 고양시 1.76% 순으로 나

타나 지역별 편차가 가장 심한 예산 항목이다. 특히 고양시의 예산은 수원시와 성남시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리고 '의료지원' 예산은 고양시 7.1%, 성남시 8.1% 수준인데 비해 수원시는 15.7%로 다른 두 도시보다 2배 정도 많다. 반면, '문화체육정보' 예산은 성남시(5.9%)가 고양시(1.3%)와 수원시(0.6%) 보다 상당히 높게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적이긴 하지만, 수원시 장애인들은 의료지원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성남시에 장애인들은 문화체육활동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고용 및 취업' 예산은 고양시 0.75%, 성남시 1.28%, 수원시 1.50%로 나타나 예산 항목들 가운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애인 고용 문제를 중앙정부의 문제 또는 장애를 가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으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표5〉 장애인 예산의 항목별 비교

(단위: 원/%)

항목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소득보장	9,809,613	29.4	8,316,143	20.6	8,216,833	25.6
의료지원	2,353,542	7.1	3,267,795	8.1	5,031,282	15.7
이동편의	586,556	1.8	3,023,994	7.5	4,638,750	14.5
장애인시설	16,720,193	50.2	18,519,601	45.8	10,421,316	32.5
고용 및 취업	249,177	0.8	517,420	1.3	481,972	1.5
자립생활	2,856,254	8.6	3,844,629	9.5	2,680,269	8.4
문화체육정보	423,412	1.3	2,395,266	5.9	186,320	0.6
기타	316,500	1.0	550,036	1.4	423,600	1.3
총액	33,315,247	100	40,434,884	100	32,080,342	100

⑤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비교

이 절에서는 '자립생활' 예산 가운데 최근 장애인 사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지자체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표6〉에 나타난 연도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성남시가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었다. 2008년과 2010년을 비교할 때, 성남시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무려 169.1%나 증가하여 고양시 34.1% 증가, 수원시 39.1% 증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그 결과, 세 도시의 장애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2010년 현재 성남시의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고양시의 약2배, 수원시의 약1.5배나 된다.

〈표6〉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비교

(단위: 천원)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2008년	1,359,952	1,760,806	1,267,120
2009년	1,775,739	1,658,091	3,596,065
2010년	1,823,171	2,449,770	3,410,199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 수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표7〉에서 보듯이, 세 도시의 1급 등록 장애인 수는 비슷한데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수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고양시와 수원시의 이용자는 각각 354명(9.8%), 513명(15.1%)인데 반해 성남시의 이용자는 724명(20.4%)으로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시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대상자들(1급 장애인) 가운데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10명 가운데 1명 꼴도 되지 않는다.

이는 선진적인 서비스를 도입해 놓고도 지자체 당국의 홍보 부족 등으로 중증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7〉 1급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1급 등록장애인 수	3,597	3,389	3,546
이용자 수	354	513	724
비율(이용자/1급)	9.8	15.1	20.4

3. 글을 맺으며

– 시혜적 삶에서 보편적 삶으로, 전문가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이번 〈지자체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은 기초자치단체의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장애인 예산'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자립생활이념'의 관점에서 지자체 장애인 관련 예산을 모니터링한 점도 의미가 크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장애인은 단순한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의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정책은 재정으로 통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고집 〈진보의 미래〉에서 말한 것처럼,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의 장애인 예산을 통해 지자체별 장애인 정책의 흐름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세 도시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시설 운영비 같은 경직성 예산에 편중된 반면 주거권, 자립생활권, 이동권, 노동권 등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과 정책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 우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된 좋은 예산과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꾸준하게 풀뿌리 예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지자체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결실이 아닐까 싶다.

동정은 싫다

– '동정'이라는 키워드로 쓴 미국 장애운동사! –

글. 한국DPI출판부

조지프 P. 샤피로 지음 / 윤삼호 옮김

장애 '이해'를 위한 필독서!

비장애인이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장애인이 되어보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다. "시저를 이해하기 위해 시저가 될 필요까지는 없다."(막스 베버) 그렇지만 타인을 이해하려면 그의 입장에 서서 그가 처한 상황과 관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래도 타인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런 것처럼 장애인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이들의 주장과 요구가 무엇인지, 이들이 처지가 어떤지 알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 평범한 진리가 장애인들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가령, 장애인 인권 변호사 티모시 쿡이 죽자 지인들은 "고인은 전혀 장애인 같지 않았다"(p4)고 말했다. 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없단 말인가? 이런 말은 흑인에게 "당신은 전혀 까맣지 않다"고 말하는 것만큼 모욕적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장애인은 자신의 문제를 논의하는 곳에서조차 배제된 탓이다. 전문가, 관료, 가족, 심지어 자원봉사자들이 장애 문제를 도맡아온 탓이다. 장애인은 서비스나 돌봄의 대상이고, 자신의 결함을 치유해야 할 존재일 뿐이다. 어떻게 하든 스스로 장애를 극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와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일 뿐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장애는 그 자체로 사회적 일탈 또는 비정상으로 구성된다. 이런 인식 틀로 장애(인)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장애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동정'이라는 키워드로 쓴 미국 장애운동사!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책의 키워드는 '동정'이란 말이다. 장애인들은 "동정은 억압적이다"(p15)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 장애인들은 '제리 루이스 쇼' 같은 모금방송을 반대하는 시위를 해마다 벌인다. 이들은 '동정심에 오줌을 갈기자(piss on pity)'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방송국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 자신들을 위해 모금을 한다는데 어째서 그런가?

이 사회는 장애인을 아픈 사람, 수동적인 사람, 무능력한 사람, 고통 받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은 '따뜻한' 동정에 기대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모금방송은 이 모든 동정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중증 장애 아이가 등장하고, 아이의 고통이 구구절절이 소개되고, 부모는 눈물을 흘린다. 그럼에도 아이는 '씩씩하게' 웃으면서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감동하여 너도나도 지갑을 연다. 이것이 모금방송의 전형적인 레퍼토리다.

모금방송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수용시설들, 수많은 돌봄 프로그램들, 장애인으로 사느니 죽는 게 더 인간적이라며 자행되는 안락사 같은 행위에도 장애인을 동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깔려 있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건강, 감동, 동정 따위가 아니라 차별과 사회적 존중이라는 사실"(p361)을 아직 모르고 있다. 장애운동가들은 동정의 이미지야말로 장애인이 동등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한다. "장애인들은 자신이 늘 동정의 대상이나 감동의 원천으로 묘사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장애인들은 물론이고 장애인들에게조차 내면화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사회적 고정관념, 인위적 제약, 차별을 창조해 내고 비장애인들이 소수자들을 싫어하게끔 만든다."(p35)

한국 장애운동을 비춰보는 거울!

미국 장애운동은 1980대 후반에서 1990년 초반에 정점에 다다른다. 이 때 미국장애인법(ADA)이 제정되었고, 이 책이 집필된 것도 이 시점이었다. 10년 뒤 한국에서도 장애운동이 들불처럼 일었고, 2007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책의 쟁점들 – 가령, 동정의 문제, 자립생활운동, 갤로뎃 학생 시위, 법 제정 운동, 탈시설운동, 보조기구 문제, 안락사 논쟁 – 은 오늘날 한국 장애운동의 쟁점이기도 하다.

이를 테면, 제1장은 동정과 장애 이미지를 다루는데, 한국 장애운동의 핵심 구호 역시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제2장이 다루는 자립생활운동은 누구나 인정하듯 한국 장애운동의 최대 쟁점이다. 농 문화를 다룬 제3장은 수화를 할 수 있는 농학교 교사가 없어 구화(口話)로만 수업을 하는 한국의 농교육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또 미국장애인법 제정 과정을 다루는 제4장은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과 비교하여 읽어 볼만하다. 제5장, 제8장, 제10장은 탈시설운동과 지적 · 자폐성 장애인들의 삶과 운동을 조명한다. 이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이다. 보조기구 문제를 다루는 제7장 역시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서 읽으면 유익할 것이다. 제9장은 안락사 논쟁을 다루는데, 최근 한국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미국 장애운동에 관한 이야기지만 대부분 우리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장애인 독자들은 이 책에서 한국 장애운동이 도달한 지점과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장애인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장애(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레인맨

– 자폐인으로 성공한 최초의 영화 –

글. **김의수** / 센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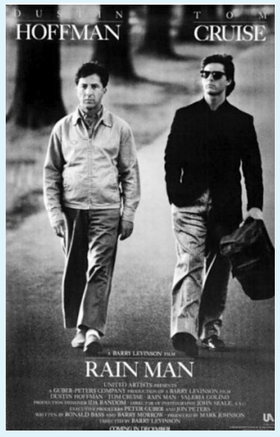

1987년/ 미국/ 베리 레빈슨 감독

오래전 아버지와 다툰 뒤 집을 나가 혼자 살고 있는 찰리(탐 크루즈)는 이기적이고 돈 욕심이 많은 자동차 중개상이다. 어느 날, 아버지가 죽으면서 어릴 적 시설로 보낸 형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큰 빚까지 지게 된 터라, 찰리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형에 대한 원망을 품은 채 기억조차 나지 않는 형 레이먼(더스틴 호프만)을 찾아 나선다. (두 형제는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동생 찰리는 형 '레이먼'의 이름을 '레인맨'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마침내 찰리는 어느 장애인 시설에서 형 레이먼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심한 자폐성 장애인이었다. 같은 말을 계속 중얼거리고, 늘 정해진 시간표대로 행동하는 전형적인 자폐인이었던 것이다. 찰리는 그런 형을 보고 혼란에 빠진다.

돈에 눈이 먼 찰리는 보호자 행세를 하며 형을 시설 밖으로 빼내 LA로 향하지만, 순탄한 여행이 되지 못한다. 시설에서 시간표대로만 생활하던 형 레이먼은 느닷없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신경질만 부린다. 피자는 늘 페퍼로니로, 생선튀김은 반드시 8조각,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라디오와 TV를 틀어주어야 하는 형과 여행한다는 것이 찰리에게도 곤욕이다.

하지만 레이먼은 순식간에 숫자를 파악하는데 비상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식당 바닥에 떨어진 무수한 이쑤시개의 개수를 금방 알아맞히고,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는 잭팟을 터뜨려 동생에게 큰돈을 안겨준다.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여행을 하면서 찰리는 점차 형을 이해하게 되고 두 사람의 형제애는 무르익어 간다. 과연 두 형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인가? 1980년대 미국 사회는 자폐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까?

베리 레빈슨 감독이 1988년에 연출한 〈레인맨〉은 자폐인 캐릭터를 등장시켜 흥행에 성공한 최초의 영화다. 당사자가 연기한 건 아니지만, 이 영화가 성공하면서 자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주인공 더스틴 호프만은 1987년 남우 주연상을 받을 만했다. 그런데 영화에서 똑똑하고 야심찬 청년으로 연기한 탐 크루즈가 실제로는 심한 난독증 장애인이라는 점은 아이러니다.

또 하나, 이 영화의 실제 모델이었던 킴 픽은 이른바 고기능 자폐인으로 불리는 '서번트'이다. 그는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우는 초능력에 가까운 재능을 가진 덕분에 미국의 어느 시립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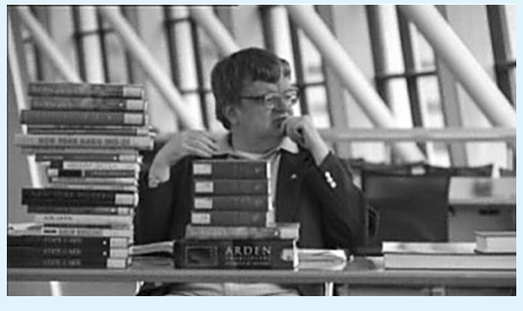

▲ 〈레인맨〉의 실제 모델 킴 픽

장애 이슈

서울시의회, 자립생활지원조례와 장애인인권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지난 해 12월3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시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

또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을 통해 시설퇴소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비 지원 등 각종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이날 함께 통과된 '장애인인권증진조례'에 따라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시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2회 이상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전시, 장애물 없는 도시 만든다

대전시는 도시디자인 계획에 장애물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한다고 2월9일 밝혔다. 우선 오는 2013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해 자치구별 1개 구간(1㎞ 내외)을 선정,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대덕구 중리길 570m 구간을 선정 ▲도로 선형 개량 및 보도폭 확장 ▲보도면 정비, 단차 제거 ▲전신주 지중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벤치, 승강장 등 각종 가로시설물 27종에 대해 표준형디자인 개발 용역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해 내년 2월까지 완료, 가로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성남시의회,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추진

'광주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가 2월11일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주요 내용에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및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와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 위원회도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성남시의회도 '성남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 또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9인 이내의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타 지역에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인콜택시를 맘껏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월17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관할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하고 있어 타 지역 장애인의 경우 이동시 많은 불편이 발생해왔다.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3월3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기준과 동료상담사업 기준을 명시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와 제40조에 각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과 '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에 관한 부분이 신설돼 있다.

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은 장애인 중심으로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립생활센터의 의사결정기구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고, 동료상담전문가 1인 이상을 두고 센터장 이외 직원 중 1인 이상을 장애인으로 둬야 한다.

또 자립생활센터는 ▲역량 강화 및 장애인동료 서비스 지원 ▲정보제공·의뢰 등 다

양한 서비스 제공 ▲물리·사회적 환경 개선사업 ▲차별 해소 및 인권옹호·증진 ▲중증장애인 적합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 장애인 주거지원 추진계획 발표

서울시는 전세주택 자금 지원, 맞춤형 주거개선, 체험홈·자립생활가정 운영 등을 골자로 한 '2011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3월3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월세 거주 1~2급 장애인 세대주 총227가구(112억3,100만원)에 전세보증금을 무상 지원한다. 장애인의 주거 내 이동이 쉽도록 문턱제거, 화장실 개선, 핸드레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맞춤형 주거개선 사업은 40가구(2억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시설 퇴소자가 6~18개월 거주할 수 있는 체험홈(20개소)과 체험홈 수료자가 2년(최장 5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21개소) 운영을 위해 총 9억67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장애인복지거주시설 240개소에 839억1,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동주민센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서울시는 동주민센터의 디자인을 장애유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3월9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 공간 및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뜻한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과 '서울형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 '통폐합 동사무소 리모델링 디자인가이드라인' 등의 포괄적 개념을 준수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매뉴얼을 개발했다. 시는 현재 장애인 및 노약자 거주 비율이 높은 성산2동을 시범적용지로 정하고 매뉴얼의 일부 내용을 적용,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상태다.

시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정책 · 예산 · 법률 등의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감시 · 평가 · 공론화를 통해 장애인 정책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시민사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당사자에 의한 합리적인 대안제시 및 정책참여를 유도하여 장애인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권익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모니터단 운영 : 모니터단의 8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여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비장애인 모니터단원과 협력을 통해 균형과 조화를 유지합니다.

전국 8개 권역으로 운영 : 전국 8개 권역 모니터단 운영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 경남, 제주)
: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풀뿌리 모니터링을 이루기 위해 권역을 세분화하고, 지역 모니터링센터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 주요 사업

정책모니터링 — 중앙정부 및 244개 지자체의 장애인 예산을 분석하여 장애인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유도

의정모니터링 — 국회 및 지방의회의 장애인정책 및 입법 등에 대한 의정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알권리 충족 및 지방자치와 장애인정책 발전에 기여

자치법규모니터링 — 전국의 자치법규 85,000여 건에 포함된 장애차별적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선하여 장애인 인권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조례 제정 도모

지역특화모니터링 — 지역 · 분야별 장애인 참여형 특성화 모니터링 실시하여 신규 모니터링영역과 방법론 개발 및 지역의 장애인 권익 향상

기타모니터링사업 — 편의시설, 웹접근성 등 장애인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모니터링 협력체계 구축 및 당사자 모니터단 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정책역량 강화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023-437067 (예금주: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 책자는 보건복지부 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않는 대한민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make the right real

"장애인권, 이제 실천입니다"

지역모니터링센터

서 울 (대표 : 이권희) T. 02.2252.905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47-8 태화빌딩3층
부 산 (대표 : 김호상) T. 051.582.71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1동 230-15
광 주 (대표 : 김 랑) T. 062.673.0420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61-2
대 전 (대표 : 안승서) T. 042.286.0036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339-4 동진프라자 307호
울 산 (대표 : 성현정) T. 052.289.125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01-3 신라프라자 105호
경 기 (대표 : 안미선) T. 031.906.30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78-2 남정시티프라자 806-1호
충 남 (대표 : 박광순) T. 041.579.2752 충남 천안시 두정동 1903 태산빌딩 202호
전 북 (대표 : 김미아) T. 063.229.198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736-3 201호
경 남 (대표 : 김호상) T. 055.283.13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68번지 토월복합상가 303호
제 주 (대표 : 최희순) T. 064.751.8097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112-22 1층